

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내규

제1조(배경 및 목적)

① (목적)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학생 지도를 위하여 동아시아물류학부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한다.

제2조(대상)

① 내규를 적용 받는 학생은 다음과 같다.
 - 2015학년도 이후 신입학자

제3조 (졸업자격요건)

①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졸업자격요건으로 <표 1>비교과과정 최소이수점수(15점)을 취득하여야 한다.

<표 1> 졸업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비교과과정 이수표

주관부서 (점수)	상세내용	희당점수	최소 요구 점수	결과물	
학부과 (4점)	지도교수(혹은 학부과 교수) 상담	1점	4점	상담기록	
교수학습 지원센터 (5점)	기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▪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	5점 5점	5점	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 램 참여확인서	
	기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습법 특강 ▪ 강의듣기 노하우 ▪ 노트필기 노하우 ▪ 발표 노하우 ▪ 보고서작성 노하우 	1점			
	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학습법 워크숍 ▪ 토의토론 ▪ 학습포트폴리오 ▪ 팀과제 해결전략 ▪ 발표클리닉 	1점			
	맞춤형	학습상담/클리닉			2점
	학습 커뮤 니티	성결튜터링			3점
		성결스터디			3점
취업지원과 (6점)	이력서클리닉	1점	1점	진로개발시스템 참여확인서	
	진로개발시스템 이력서 등록	1점	1점	워크넷포함 (진로개발시스템 참여확인서)	
	취업지원과 프로그램	2점	2점	취업 및 영어캠프, 성결직무역량강화스쿨, 취·창업동아리, 글로벌인재육성, 산업체별 교육과정, 취업의달인,	

				잡끼프로그램, 취업성공패키지, CAP+ 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, 창업지원프로그램 (진로개발시스템 참여확인 서)
	취업지원관 상담	1점	2점	진로개발시스템 참여확인서 (회당 1점*2회)
총점			15점	

※ 프로그램 신설 시, 점수표 추가 가능

※ 입학 후 졸업시험 이전까지 이수 가능

② 졸업자격요건 비교과과정 관련 증빙 자료 (참여확인서 등) 및 어학성적표를 매년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졸업예정자가 <표 1>의 비교과과정 최저 이수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, 학과졸업사정회의(교수회의)를 거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4조(졸업논문)

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해당전공 전임교수 전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.

② 해당전공 전임교수 전원이 논문과 동등한 결과물로 인정하는 자격증, 국내외연수, 어학성적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.

제5조(전공트랙선택)

① 동아시아물류학부 소속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학부내 전공트랙(동아시아학 & 유통물류학) 중 하나의 전공트랙에 소속된다.

② 전공트랙 배정 기준은 1. 학생지원 희망여부, 2. 어학성적, 3. 1학년 1학기 성적 등에 의거해 희망전공의 여석에 따라 배분한다.

제6조(어학성적)

① 동아시아물류학부 소속학생은 학부에서 정한 학기별 제2외국어(일본어 & 중국어 중 하나 선택) 기준점수를 충족시켜야 한다.

제7조(전과생 및 편입생)

① 동아시아물류학부 전과생 및 편입생은 전과 및 편입 합부 결정시점에 전공트랙(동아시아학 & 유통물류학) 중 하나의 전공트랙에 소속된다.

② 전공트랙 배정 기준은 1. 학생지원 희망여부, 2. 어학성적, 3. 전 소속학부 성적 등에 의거해 희망전공의 여석에 따라 배분한다.

제8조(지도교수배정)

- ① 1학년 지도교수 배정은 전공에 무관하게 균등배정한다.
- ② 2학년 이상 학생은 주전공에 따라 배치하고 4학년 졸업시까지 유지된다.

제9조(준용)

- ①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다.
-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상위 규정에 따르고, 상위 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내규는 동아시아물류학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- ③ (개정세칙) 제7조, 제8조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